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 불필요 조항 삭제
- 영농정착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
- 농업계 고등학교 화훼기술육성의 폭을 경제작물로 확대시행

주요골자

- 징수관을 명시(내무국장으로)
- 지원금 증액(100만원 → 300만원)
- 농업계고등학교 화훼기술육성에 국한된 것을 경제작물육성으로 확대

근거법령 :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2항

첨부

1.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2조의”를 “제3조의”로 하고, 이경우 뒤에 “정수관은 내무국장으로”를 삽입한다.

제9조 ①~⑤항은 삭제한다.

제9조의2중 “제9조의2”을 “제9조”로 하고 제9조의 ③항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3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 용자특례)를 “제9조의 2”(“경제작물”기술육성을 위한 농공특별지원용자특례)로 하고

제9조의3제1항중 “화훼기술”을 “경제작물”로 “선정한”을 “선정된”으로 하며 “화훼기술배양”을 “경제작물기술육성”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중 “화훼기술”을 “경제작물기술”로 한다.

제9조의3제5항중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에 의한다.”을 “이 조례와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